

## 국유재산 내 무단경작지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

「국유재산관리법」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내 무단경작지 조성 및 각종 적치물을 적치한 자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에 따라 자진철거를 명령하고자 하나 행위자 파악 및 특정이 불가능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5.8.13.

1. 공 고 명: 국유재산 내 무단경작지(농경용)자진 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: 2025.8.13.(수)~2025.8.27.(수) 15일간

3. 공고사유: 송달받을 자의 이름,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

4. 대상자 정보

가. 대상지: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1-154외 1필지 (1,311㎡)

나. 행위자: 미상(무단경작자)

다. 주 소: 미상

5. 공고내용

가. 서울용산우체국에서 관리하는 위 국유재산에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농경지 조성 및 각종 적치물 등을 설치·적치한 행위와 관련하여 「국유재산법」제74조 (불법시설물의 철거)에 따라 철거명령을 통보하오니 2025년 8월 30일까지 위 무단경작지 및 각종 적치물을 자진철거 후 반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위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「국유재산법」제74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제2조 (대집행과 그 비용징수)에 따라 서울용산우체국에서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다.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)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라.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 ([www.simpan.go.kr](http://www.simpan.go.kr)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## 6. 기타

-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용산우체국 지원과 서무팀장(담당 유종용, 전화 02-6966-0811)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.

서울용산우체국

## 무단경작지 위치도



- (소 재 지)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1-154외1필지
- (경작면적) 약 1,311㎡, (사진상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)

## 무단경작지(농경용) 현장 사진



①무단경작지 전경



②무단경작지 전경



③무단경작지 전경